



제1900호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 | | | |
|----------------|---|-----------|----|
| ○ 규 칙 제 1141 호 | 국가유신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 기 획 예 산 과 | 2 |
| ○ 규 칙 제 1142 호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 기 획 예 산 과 | 23 |
| ○ 규 칙 제 1143 호 |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평 생 교 육 과 | 26 |
| ○ 규 칙 제 1144 호 | 「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민 원 봉 사 과 | 29 |

공 고

- | | | | |
|---------------|--|-------------|----|
| ○ 공 고 제 804 호 |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총 무 과 | 41 |
| ○ 공 고 제 808 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52 |

고 시

- | | | | |
|--------------|---------------------------------------|-----------|----|
| ○ 고 시 제 4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자구 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도 시 재 생 과 | 54 |
|--------------|---------------------------------------|-----------|----|

회 람								
--------	--	--	--	--	--	--	--	--

규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4월 18일

남동구 규칙 제114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 공사”를 “국가유산수리 공사”로 한다.

제2조(「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문화관광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문화예술 진흥						
	가. 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
	나. 예술진흥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 안			○		
	다. 예술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 안		○			
	라. 예술진흥지도	기 안	○				
2.	문화예술 행사						
	가. 행사개최 기본계획 수립		기 안				○
	나. 행사개최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 안			○		
	다. 행사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	기 안		○			
	라. 축제관련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 안					○
	마. 행사관련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기 안		○			
3.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기 안		○			
4.	남동문화원 운영 지원						
	가. 남동문화원 사업계획 승인	기 안					○
	나. 남동문화원 운영지원	기 안		○			
5.	국가유산 지정 및 비지정 국가유산 관리	기 안				○	
6.	국가유산 보수 관리						
	가. 사업계획 수립	기 안			○		
	나. 설계지침 작성	기 안			○		
	다. 설계승인	기 안			○		
	라. 공사감독관 임명	기 안	○				
	마.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	기 안	○				

7.	관할구역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 국가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기 안		○			
8.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기 안	○				
9.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육성	기 안		○			
10.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						
	가. 기본(종합)계획 수립		기 안				○
	나. 자문(심의)위원 위·해촉 및 운영		기 안			○	
	다. 기타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안			○		
11.	문화재단 운영 지원						
	가. 남동문화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기 안					○
	나. 남동문화재단 운영지원	기 안		○			
12.	영화 및 영화상영관 관리						
	가.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기 안		○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기 안	○				
	다.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 신청	기 안	○				
	라.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마.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 안		○			
13.	공연 및 공연장 관리						
	가. 공연장 등록 신청	기 안		○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기 안		○			
	다. 공연장등록증 재교부 신청	기 안	○				
	라.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 안		○			
14.	출판사 및 인쇄사 관리						
	가. 출판사 및 인쇄사(신규·변경) 신고	기 안	○				
	나. 잡지외 간행물(신규·변경·폐업) 신고	기 안	○				
	다. 간행물 제출	기 안	○				
	라. 지도감독 및 단속	기 안		○			
	마. 과태료 처분	기 안		○			
15.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 안			○		
16.	남동구사 편찬계획 수립	기 안					○
17.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련 사무						
	가. 관광숙박업 등록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기 안				○	

나. 관광사업 등록(허가 및 신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 안		○			
다. 관광사업 변경등록(변경허가 및 신고,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 안		○			
라. 관광사업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					
마.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		○					
바. 관광사업휴업(폐업) 통보(신고)		○					
사. 관광사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 안		○			
아.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					
18.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가.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기 안		○			
나. 유통관련업자 변경 등록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기 안		○			
다. 영업정지		기 안		○			
라. 청문 및 등록 취소		기 안		○			
마. 행정처분		기 안		○			
바. 지도단속 및 감독		기 안		○			
사. 유통관련업자 폐업 및 등록증 재발급		○					
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		기 안		○			
자. 유통관련업자 교육		기 안		○			
차. 유통관련업자 결격사유(성범죄 경력) 조회		○					

[별지 2]

[별표 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 관광과	1.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시책사업 추진
	4. (재)남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에 관한 사무
	7.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무
	8.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 추진
	9. 테마기획공연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
	10. 남동소래아트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11. 소래역사관 위탁관리
	12. 청사 예술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14. 문화유산매매업 관리
	15. 매장유산 관리
	16.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17.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8.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9. 구사 편찬 사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
	20. 남동구 풍물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1.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사무
	22. 영화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사무
	23. 공연장 등록과 공연에 관한 사무
	24. 잡지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6.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사무
	27. 잡지 등록 및 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8. 여행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9.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0.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1.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2.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3.	관광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4.	관광 시책사업 추진
35.	지역자원연계 관광상품 연구·개발

[별지 3]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7조, 제21조 관련)

계급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직렬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직렬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테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능 장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기 사 :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산업기사 :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기 능 사 :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 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산업기사 :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녹 지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능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 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 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능 장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 :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 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 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 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지 4]

[별지 제7호서식]

유물·자료 매매계약서

가. 매매유물

- 유물명 및 수량 : 별첨내역서
- 계약금액 : 금 원정 (금 원)

나. 소래역사관과 계약자는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래역사관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래역사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매매된 유물이 매장유산,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매매자는 유물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라.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유물명 및 수량내역 1부.

년 월 일

매 입 자

소래역사관

매 도 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 등 용어 정비 :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규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4월 18일

남동구 규칙 제114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을 “사항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2023.6.27.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인용조문 정비 :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규 칙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4월 18일

남동구 규칙 제1143호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 펼침터

시설명	면적	용도	사용시간	기준	사용료	비 고
펼침터	154.91m ²	각종 전시 (갤러리)	09:00 ~ 18:00	1일	30,000원	◦ 최대 사용기간 : 1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사용 불가 및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

○ 채움강당

시설명	면적	용도	사용시간	기준	사용료	비 고
채움강당	396.88m ²	강연, 발표회, 공연 등	09:00 ~ 21:00	1시간	50,000원	◦ 공연연습, 행사 준비 등을 위한 사용시 사용료의 50% 감면 ◦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공휴일 사용시 사용료의 20% 가산 ◦ 냉·난방비 별도

※ 채움강당 - 냉방비 : 시간당 30,000원, 난방비 : 시간당 25,000원

※ 채움강당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당 일할 계산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평생학습관 시설 대관시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학습관 이용·관리에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시간 명시 및 냉난방비 등 사용료 별도 징수 조항 신설(별표 5)
 - 별표 내 사용시간 신설 및 사용기간 변경
 - 펼침터 : 09:00 ~ 18:00, 채움강당 : 09:00 ~ 21:00
 - 펼침터 : 사용기간 토·일요일 포함 ⇒ 토요일·공휴일 사용 불가 및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
 - 채움강당 사용시 공연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간 및 냉난방비 사용료 별도 징수 등 조항 신설

규 칙

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4월 18일

남동구 규칙 제1144호

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을 “남동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민원1회방문처리제 라 함은”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으로, “잇는”을 “있는”으로, “협조등”을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라 함은”을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으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을 “거부된”으로, ““구청장”이라”를 ““구청장”이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운영등”을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을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1회방문처리”를 “민원 1회방문 처리”로,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민원인과”를 “민원인과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무책임자들 이”를 “실무책임자들이”로, ““심의회” 라”를 ““심의회”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처리주무부서” 라”를 ““처리주무부서”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심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사안이 종료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일이상이고”를 “7일 이상이고”로, “5개이상일”을 “5개 이상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접수후 48시간내”를 “민원접수 후 48시간 내”로, “30일미만인 경우에는 접수후 3일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접수후 5일 이내”를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남동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남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남동구 민원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한하여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영 제38조의2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심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18조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심의요청) 심의대상 민원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로 위원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제12조에서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

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심의 결과(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관리하고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에 “제5장 민원처리통보”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민원처리통보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처리진행상황등”을 “처리진행상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예상시기등”을 “예상시기 등”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중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을 “거부된”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남동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심 의 안 건			
의안번호	제 호	심의연월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심의위원수	정원		참석		불참	
가결위원수			부결위원수			
심 의 결 과 (결 정 요 지)						

년 월 일

남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 (인)

■ [별지 제5호서식]

남동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결 재	서 기	간 사	위원장
회의일시		장 소			
위원참석	정 원	참 석		불 참	
	(참석위원)		(불참위원)		
민 원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민원인 성 명		주 소			
민원요지					
회의내용					

■ [별지 제6호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 ☐ 민 원 명 :
- ☐ 민원인 주소·성명 :
- ☐ 접 수 일 자 :
- ☐ 처 리 기 한 :
- ☐ 최종처리 예상시기 :

귀하께서 우리구에 신청하신 상기 민원서류에 대하여 「남동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 내용과 같이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오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담당자 ○○○)로 문의(☎ ○○○-○○○○)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처리부서	○○○과	○○○과	○○○과	○○○과
완 료 민 원					
처리 중인 민원사항					
문제점 및 조치계획					
부서별처리예상시기					

남 동 구 청 장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함
-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실무종합심의회의 구성 조항 추가 : 안 제7조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기능, 심의대상 등 : 안 제10조~제1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804호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구청 강당 운영을 위해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분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강당 사용신청 기간 변경(안 제5조제3항)
- 나. 사용료 납부기한 지정 및 징수·환불 규정 현행화(안 제7조제2항)
- 다. 사용료 반환 기준 세분화(안 제7조제4항)
- 라. 정당·정치적 목적 강당 사용 제한 문구 삭제(안 제9조제2호)
- 마. 사용료 미납 시 강당사용 취소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항)
- 바. 별지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032-453-2185, FAX 032-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구청 강당 운영을 위해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당 사용신청 기간 변경 : (안 제5조제3항)
- 사용료 납부기한 지정 및 징수·환불 규정 현행화 : (안 제7조제2항)
- 사용료 반환 기준 세분화 : (안 제7조제4항)
- 정당·정치적 목적 강당 사용 제한 문구 삭제 : (안 제9조제2호)
- 사용료 미납 시 강당사용 취소 근거 마련 : (안 제11조제1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고지서를 통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④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부 반환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부 반환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제9조제2호 중 “종교 및 정당·정치를”을 “종교활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음 등으로 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

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강당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사무실	☎	
				H. P.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 대강당 ☐ 소강당 ☐ 냉 방 ☐ 난 방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시간	년 월 일 부터 까지					
	년 월 일 부터 까지					
냉·난방 사용시간		년 월 일 부터 까지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빔프로젝터, 피아노				
	부속설비					
	사용자설비					
사 용 료		금 (₩)				
유의사항		1. 냉·난방 사용 시 비용 별도이며, 대·소강당 동일하게 냉방비는 시간당 30,000원이며 난방비는 시간당 25,000원입니다. 2. 연습, 준비 등을 위한 사용시간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하며 ‘사용시간’란에 실제 사용시간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18:00 이후 사용시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됩니다. 4. 사용목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당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② (생략) ③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u>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의 납입 고지서로 구급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 취소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료를 돌려줄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고지서를 통해 <u>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u>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 <u>사용료 전부 반환</u> 2. 제11조제2항에 따라 <u>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u>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 략)
- 2.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취소 명령(별지 제6호)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2. (생 략)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경우 : 사용료 전부 반환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예

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제9조(사용의 제한) -----

1. (현행과 같음)

2. 종교활동을 -----

3. 4. (현행과 같음)

5. 소음 등으로 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

--

4. · 5. (생 략)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u>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u> <u>사용일 15일 전까지</u> 취소 신청 하여야 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② ----- ----- ---- <u>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u> <u>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u> 구청 <u>장에게 제출</u>-----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80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3. 공고대상 : 16로5549 외 29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4. 4. 18.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2024년 4월분 1차)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16로5549	Model Y Standard Range	이**	2024.04.16	소유자 요청
2	259모4754	Mercedes-Benz E350 4MATIC	신**	2024.04.16	소유자 요청
3	83두2923	현대4.5톤트럭	김**	2024.04.15	소유자 요청
4	150호5583	쏘나타(SONATA)	신**	2024.04.15	소유자 요청
5	153하2816	SQ8 TDI	폭**	2024.04.12	소유자 요청
6	134다7505	A6 40 TDI	폭**	2024.04.12	소유자 요청
7	171모8062	A6 45 TFSI quattro	폭**	2024.04.12	소유자 요청
8	177조1153	Q5 40 TDI quattro	폭**	2024.04.12	소유자 요청
9	301도7916	GLA220	폭**	2024.04.12	소유자 요청
10	153하2844	Tiguan Allspace 2.0 TDI	폭**	2024.04.12	소유자 요청
11	18허0511	아이오닉5(IONIQ5)	메**	2024.04.11	소유자 요청
12	41허0768	쏘나타(SONATA)	신**	2024.04.11	소유자 요청
13	151조7624	쥘그랜드체로키	임**	2024.04.08	소유자 요청
14	165하5917	GV80	신**	2024.04.08	소유자 요청
15	64어4191	카이엔	이**	2024.04.08	소유자 요청
16	252노9199	A6 40 TDI	폭**	2024.04.05	소유자 요청
17	160버6353	Tiguan Allspace 2.0 TDI	폭**	2024.04.05	소유자 요청
18	160버6326	T-ROC 2.0 TDI	폭**	2024.04.05	소유자 요청
19	153버3882	마세라티 기블리 모데나	신**	2024.04.05	소유자 요청
20	145모5685	K9	김**	2024.04.03	소유자 요청
21	221너7025	Mercedes-Benz E450 4MATIC	신**	2024.04.03	소유자 요청
22	128하3588	K3	신**	2024.04.02	소유자 요청
23	145하8634	Mercedes-Benz GLC300 4MATIC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24	41누3362	A6 40 TFSI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25	128하1193	Q7 45 TFSI quattro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26	228구2138	A7 50 TDI quattro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27	169허4671	A6 45 TFSI quattro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28	305모1479	A6 40 TDI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29	334오9491	A5 Sportback 45 TFSI quattro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30	185서5975	A8 50 TDI quattro	폭**	2024.04.01	소유자 요청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4-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지구 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지구 소로3-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4. 18.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93-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능골지구 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3단계)

3. 사업규모

- L=238.0m, B=6.0m, A=1,572.3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별첨1]용지조서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소	지번			도로	법면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수산동	593-20	전	15.1	7.0		7.0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2	수산동	578-12	전	29.0	27.0		27.0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3	수산동	593-3	대	478.9	46.0		46.0	정*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신기지점)	근저당권자	
4	수산동	578-4	전	185.0		2.0	2.0	상*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5	수산동	592	임	4,965.0	219.0	13.0	232.0	김*란 외 3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26-2 **** ****	남동구 (인천광역시)		압류	
6	수산동	576-1	전	31.0	30.0		30.0	배*영 외 4인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3번길 **** ****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7	수산동	575-17	과	23.0	23.0		23.0	배*영 외 4인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3번길 **** ****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8	수산동	575-5	도	391.0	387.0		387.0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9	수산동	575-18	과	1.0	1.0		1.0	배*영 외 4인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3번길 **** ****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10	수산동	575-11	도	4.9	4.9		4.9	주식회사 토*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도로 107번길 **** ****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인천항지점	근저당권자	
11	수산동	575-20	과	486.0	66.0		66.0	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12	수산동	575-21	과	11.0	11.0		11.0	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13	수산동	575-1	대	330.0		1.0	1.0	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14	수산동	575-15	과	4,509.0	86.0	58.0	144.0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15	수산동	575-19	도	10.0	10.0		10.0	주식회사 토*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도로 107번길 **** ****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인천항지점	근저당권자	
16	수산동	575-7	대	253.0	20.0		20.0	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	김기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72, 303동 2402호	근저당권자	
17	수산동	575-6	과	259.9	14.0		14.0	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	남동구 (인천광역시)		압류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지번			도로	법면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8	수산동	575-2	대	109.0	83.0		83.0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19	수산동	597-86	도	1,744.0	21.0		21.0	국	국토교통부				
20	수산동	572-6	전	0.4	0.4		0.4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21	수산동	571-1	전	871.7	4.0		4.0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22	수산동	572-7	대	5.4	5.4		5.4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23	수산동	597-112	도	935.0	53.0		53.0	국	국토교통부				
24	수산동	572-5	전	125.6	125.6		125.6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25	수산동	529-14	전	28.0	26.0		26.0	장*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 *	히로세코리아 주식회사	시흥시 정왕동 1261-10	근저당권자	
26	수산동	529-7	도	23.0	9.0		9.0	김*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협은행 (청라지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청라지점	근저당권자	
27	수산동	597-108	도	1,749.0	90.0		90.0	국	국토교통부				
28	수산동	529-9	도	9.0	4.0		4.0	김*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협은행 (청라지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청라지점	근저당권자	
29	남촌동	598-62	도	5,385.0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30	남촌동	68	전	1,068.0	13.0		13.0	박*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				
31	남촌동	68-1	전	992.0	3.0		3.0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남동농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본점)	근저당권자	
총 계					1,498.3	74.0	1,572.3						

[별첨2]화력주소서

번호	소 재 지	측 점	화력주 번호 (일 련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소로3-5호선)	STA.0+96.5	8818C841 도림지57L23L8	한국전력	1공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소로3-5호선)	STA.0+126.0	확인 불가	한국전력	1공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소로3-5호선)	STA.0+126.0	확인 불가	한국전력	1공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소로3-5호선)	STA.0+126.0	확인 불가	한국전력	1공구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인가조건[이행사항]

가. 일반사항

1. 사전단계

1-1) 협의사항 실시계획 반영 및 준공 시 결과제출(협의사항 이행여부 별도확인)

가)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
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사전협의를 통해 인가
권자(시설물 관리부서, 의제 처리사항에 대한 담당부서 포함)의 의견을 들어
야하며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나) 국토계획법 제92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의 의제(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허
가, 도로점용허가 등)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의제 사항 처리를 위한 해당 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제기
된 의견은 실시계획에 반영(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
착수 전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인수인계 등을 위해 관리부
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1-2)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지는 사전에 토지(지장물 포함)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사용 동의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
다.

2. 시행단계

2-1) 제출된 사업계획서(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국
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사업명칭 변경,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기존 시설의 세부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개축, 도로의 포장 등 기존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의제 처리사항의 변경은 별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2)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는 열람공고 등 변경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인가 처분이 준공예정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가) 준공예정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보상협의 지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공기 연장, 자금조달 문제 등)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기간의 연장 등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나) 타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민원대처 방안 등 관련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다음 날 실시계획 실효(단, 보상관련 권원확보시 유지)**

2-3) 국토계획법 제89조제3항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인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4)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공자 선정 시 가급적 인천지역 건설업체로 선정하며, 하도급에서도 지역전문공사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건설인력,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및, 지역업체 참여율

등의 자료제출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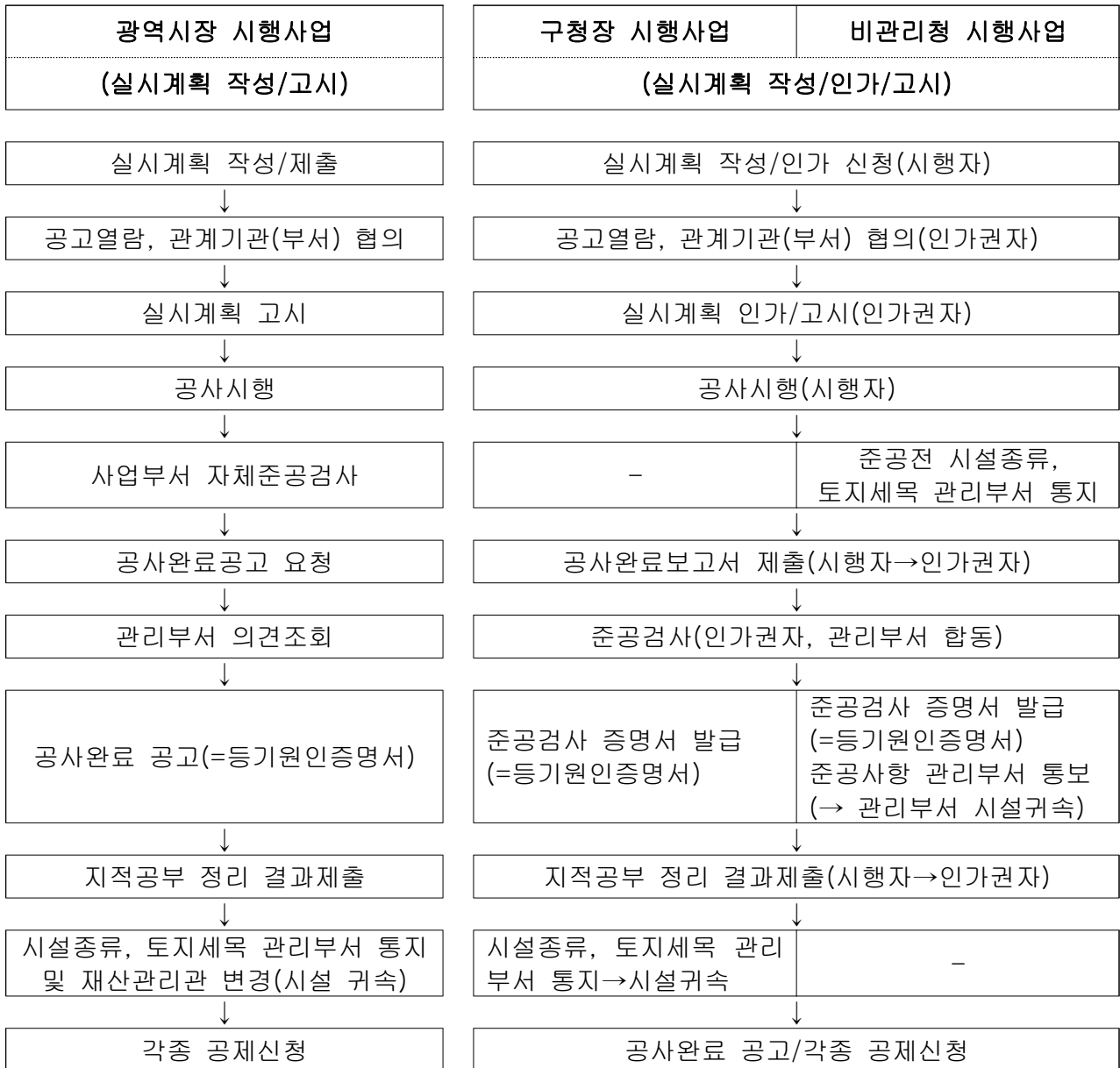
- 2-5)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제반피해의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즉시 보상 및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2-6) 실시계획 고시 후 공사가 착수되었을 때 사업시행자는 인가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준공단계

- 3-1) 비관리청 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준공전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을 인가부서와 관리부서(인수인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관리청 및 비관리청 시행자가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 처리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내용 이행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포함)을 작성하여 인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실시계획 인가 상의 사업기간 내 제출).
- 3-2)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인가부서는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시행(의제 처리사항 포함)하고 확인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필증)을 발급(비관리청 시행사업일 경우 동시에 준공사항 관리부서에 통보 → 해당시설 관리부서 귀속 효과)하고,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7항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준공검사증명서(필증)를 “등기원인증명서”로 하여 토지소유권 정리, 지목정리, 토지합병처리 등의 지적공부 정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처리(보완 처리기간 확보 등)를 위하여 준공 전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사전점검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나) 준공검사에 따른 보완사항 발생 및 보완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자체 준공시점에서 지체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최종 인수인계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증기간이 확보된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3-3) 지적정리 결과를 제출받은 인가부서는 관리청 시행사업 일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시설종류, 토지세목을 통지(해당시설 관리부서 귀속 효과, 영조물배상공제 및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신청 등 관리부서 후속조치 시행)하고, 국토계획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 3-4) 인가 받은 도시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고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닐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는 등기원인증명서(준공검사증명서)를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3-5) 관리청 시행사업의 경우에서 사업시행부와 유지관리부서가 다를 경우 반드시 재산관리관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주체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4. 개별법

- 4-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
- 4-2) 공공측량시행 대상사업은 사업완료 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후 심사가 완료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토지정보과와 협의)
- 4-3) 「도로명 주소법」 제10조(원인자 부담)에 따라 설치가 필요할 시 해당 부서(토지정보과)와 협의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사용승인·준공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 또는 비용 부담 시행하여야 한다.

- 4-4)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령 및 관련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 지시할 수 있다.

5. 기타

- 5-1) 국토계획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인가 또는 변경 인가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받은 내용과 맞지 않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원상회복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5-2) 기타 공익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인가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위 인가조건의 미이행 등 기타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가권자가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나. 시공관련 사항

- 1) 보행환경조성 및 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보행환경정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재질은 관련부서(건설과)와 협의 후 시행]
- 2)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국토부(제2015-627호), 환경부(제2015-160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하여야 한다.

- 3) 가로조명시설은 「인천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관련부서(건설과)와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4) 도로표지규칙에 부합하도록 사업구간 및 인접부를 포함하여 도로표지를 설계에 반영하되 안내문구 등은 관련부서(도로과)와 별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5) 상·하수도 설치, 가로수 식재, 포장 단면 등 공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인수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6)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시 인천지방경찰청과 별도 협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역주행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내시설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 7) 공사 착공 시 인가구역에 대한 경계지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말뚝 등을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8) 사업기간 중 토사 등의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해야 하며, 인접필지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9) 사업 착수 후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 중지 및 신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별첨]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구분	관계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남 동 구	농축수 산과	농지전용협의 동의조건 ○ 상기 허가(협의) 사항은 아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농지법 제39조 및 제42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협의)취소나 원상회복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허가(협의) 후 2년 이내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 한 후 1년 이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허가(협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3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시행은 협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는 변경협의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농지와 경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5) 공사 및 사업장 운영 시 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 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항 등은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6) 농수로·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폐지·굴착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또는 대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인근지역 농경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 타 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0원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3의 다 규정에 따른 「도로법」상의 도로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	○농지법 및 농지전용협의 동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전용목적에 맞게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편입 농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1	수산동	578-4	전	185	2	자연녹지농지전용협의대상임	
	2	수산동	575-20	과	486	66		
	3	수산동	575-15	과	4,509	144		
	4	수산동	575-6	과	259.9	14		
	5	수산동	572-6	전	0.4	0.4		
	6	수산동	571-1	전	871.7	4		
	7	남촌동	68-1	전	992	3		
	8	남촌동	68	전	1,068	13		
	9	수산동	593-20	전	15.1	7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농지전용협이가 완료된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토지임	
	10	수산동	578-12	전	29	27		
	11	수산동	576-1	전	31	30		
	12	수산동	575-17	과	23	23		
	13	수산동	575-18	과	1	1		
	14	수산동	575-21	과	11	11		
	15	수산동	572-5	전	125.6	125.6		
	16	수산동	529-14	전	28	26		
공원녹지과	가. 산지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함 나.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대상임 다.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임 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면적 증·감 등 협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만약 공사시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하여야 하며 수허가자(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수허가자(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함						○산지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도로과	『능골지구 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 무상귀속 협의 의견 □ 국유 행정재산(국토부)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산동 597-86번지 외 2개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행정재산으로 무상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기존의 공공시설이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유상매입 추진하겠음	반영

-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8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 기준에 따른 시설로,
- 형식적 요건으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 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공시설임을 공시하여야 하며(단, 하천·구거 등 자연적 공공시설은 공용개시 절차가 없어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점에 공공시설로 확인되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인정), 실질적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함.
- 귀 부서에서 무상귀속 협의 요청한 수산동 능골지구 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유지 3필지는 공용 개시된 공공시설이 아니며, 이용현황이 잡종지 및 법정도로의 설치기준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현황도로이므로 무상귀속의 요건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함.

연 번	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무상귀속 검토결과	판단사유 및 보완
	동	지번					
1	수산 동	597-86	도로	1,744	21	비대상	- 이용현황 : 잡종지 - 잡종지는 무상귀속 비대상
2	수산 동	597-10 8	도로	1,749	90	비대상	- 이용현황 : 현황도로 - 법정도로의 설치기준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현황도로는 무상귀속 비대상
3	수산 동	598-62	도로	5,385	109	비대상	- 이용현황 : 현황도로 - 법정도로의 설치기준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현황도로는 무상귀속 비대상

[참고] 현재 현황도로 및 구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8조에 의거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 행정재산이 무상귀속 대상임

[무상귀속 / 국유지 2필지 협의 불필요]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같으므로 무상귀속 절차 불필요함.

치수과

◆ 일반사항

- 하수도 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은 아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동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을 따라야 함
 - 「하수도법」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제시된 하수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 (관거의 종류 및 접합·연결) 하수관거는 내구성·수밀성·내부식성·내마모성을 갖춘 관종을 선정·사용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 중심교각은 60° 이하가 되도록(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 한다. 관거의 연결은 수밀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고무링이나 압축조인트를 사용한 소켓연결 방식 연결을 원칙으로 함. 또한, 관거 연결부의 수밀성 유지를 위해 연결에 충전하는 재료는 고착성, 지수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성이 좋은 콤포모르터(Compomortar)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하수암거의 연결관(빗물받이 및 개인하수도)은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 후 분기관(접합관)을 사용하고, 맨홀 등의 구조물과 관거와의 접속부분은 편하중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해 연성연결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함 ☞ 첨부1. 배수설비 연결관 시공현황 참조 - 하수암거의 연결관(빗물받이 및 개인하수도)은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 후 분기관(접합관)을 사용하고, 맨홀 등의 구조물과 관거와의 접속부분은 편하중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해 연성연결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함 ☞ 첨부1. 배수설비 연결관 시공현황 참조 ○ (관의 표시) 하수암거 개·보수 시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타공사로 인한 암거 파손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우수관은 흑갈색(5YR-0245), 우수관은 회색(N7)을 사용하고, 흑갈색 우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 상부 20cm이하 이격거리를 두고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함 - 800mm이상의 관은 좌·우측 중앙에 1줄씩 더 표시 -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 ☞ EX) 문구 : 우수관 0000년	반영 ○하수관거의 종류 및 접합·연결은 협의의견에 제시된 내용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되었음. ○본 사업에는 D600mm이하의 우수관이 설치되며, 회색의 우수관 관로테이프 반영하였음 반영
--	--	---	---

- (맨홀) 하수관로 설치시 관거의 기점, 방향·경사·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이나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맨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하수박스 접속구간 맨홀 설치 확행
 - 일반 배치 장소 외 관거 직선부에서는 적정 이격거리 준수하여 설치
 - 맨홀 내 인버트, 발디딤부 등 부속물 설치 철저(우수, 오수 동일)
 -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맨홀뚜껑에 관명칭, 관리자, 사업자 등을 기록한 제품을 사용 할 것
 - 맨홀 설치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



- (물받이) 노면수 배수용 가로수체(L형 측구) 및 빗물받이 설치시 하수도시설기준 표2.12.2에 따라 적합한 기준 이내 배치가 되도록 설치간격 또는 유입부 규모를 조정하여 설치 할 것
- 도로의 빗물받이의 경우 우수 집중으로 인한 도로 침수 등이 우려될 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도측 2호(400*1000) 빗물받이 설치 권장(설치간격 20m 적용)
 - (빗물받이 위치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관련기준에 부합하는 차도측 2호 빗물받이(400*1000) 적용 권장)
 - (단, 빗물받이 규격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에 따름)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유의
 - 빗물받이와 인접 빗물받이 사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종단경사 확보 할 것(시공시 유의사항으로

○관거의 기점·방향·경사·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 합류지점,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우수맨홀 설치하였음. 또한 맨홀설치기준에 따라 이격거리, 인버트, 발디딤쇠등 부속물 설치하였음.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맨홀뚜껑에 관명칭, 관리자, 사업자 등을 기록한 제품을 사용하겠음. 맨홀 설치 시 추락방지 시설물(개폐형) 설치하겠음.

반영

○ L형 측구 및 빗물받이 설치하수도시설기준 표2.12.2에 따라 적합한 기준 이내에 배치 되도록 설치간격을 적용하였으며, 설계시 사전 협의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종단구배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도측 1호 빗물받이를 적용하였으나, 추가 검토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호 빗물받이적용을 검토하겠음. 또한 빗물받

반영

도면에 명기)★★★

- 빗물받이 뚜껑은 중차량 대비 두께 7cm 이상의 스틸그레이팅 사용
- 기존 빗물받이 철거 시 공공하수관로 연결부에 밀봉캡 등을 삽입하여 수밀하게 막은 수 외부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여 밀봉조치 하여야 함

 첨부2. 관중별 폐쇄 시공 예시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① 준공검사 신청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지하시설물도 등 준공도서(전산파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IS입력 가능한 자료).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 ② 준공검사 및 인계인수 신청 시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하수관거표준시방서(환경부) 제2장 관거공사 2-10 관거시공 및 준공검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사검사,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내부검사(육안 및 CCTV)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항목별 시기·대상·수량·방법 적용 철저
 - 내부검사시 시설내 퇴적물 준설 후 육안 및 CCTV조사 시행
 - CCTV촬영 시 맨홀 투입 전 주변경관을 촬영(360도 회전)하여 투입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하고, 맨홀내부 및 하수관거 내 연결부(이음부)·파손(불량) 등 이상부분은 360도 회전 촬영하여야 함
 - ※ 암거시설은 관거내 전경 및 파손부 촬영사진 별도 제출
- ③ 준공검사 신청 시 하수도시설 구간별 공사 시공 전·중·후 사진(위치 표시) 및 관련조건 이행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3. 하수시설물 인수·인계 관련자료 작성양식 참조
- ④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 지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 뚜껑은 중차량 대비하여 두께 7cm 이상의 스틸그레이팅을 반영하겠음.

- ⑤ 기존 건축물의 배수설비에 대해 공공하수관 연결 시 아래 배수설비 설치 신고 관련 사항을 참조하여 시공할 것.

☞ 첨부1. 배수설비 연결관 시공현황 참조

- ⑥ 토피의 충분한 확보가 불확실할 경우 보호공 설치 할 것.

◆ 배수설비 설치 신고 관련

1. 배수설비는 건축 협의시 제출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상의 배수설비 설계서(도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가 시공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1항, 별표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2.13 배수설비 등 관련기준에 따라 시공할 것.
- 단지 내 최종맨홀은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관거(배수설비)의 접합은 공공하수도의 맨홀접합을 원칙으로 하고 배수설비 관로 지름이 공공하수관로의 1/2이하인 경우로서 공공하수도 맨홀접합이 불가능할 경우 공공관로 상단부(관저고에서 1/2 이상 지점, 관중심 상단부 금지)에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스타프를 사용하여 구경 확인 사진제출) 후 연결시설(분기구, 단지관 등)로 시공하여야 함.

☞ 붙임1 배수설비 연결관 개선 시공사례 참조

- 단지 내 최종맨홀은 밀폐형으로 설치(인버트 설치)하여 연결하고, 고형물질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유지류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방지가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저지대·지하실 등에서 공공하수도로 자연유하로 배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폐수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제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로접합을 위하여 공공도로 점용 또는 굴착이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도로의점용)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남동구청(도로과)]로부터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이 없도록 현장 관로(유형, 관경, 용도 등)를 필히 확인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함.[도로점용(자재적치 등) 관련해서 별도 협의할 것]
- 기존 배수설비는 철거 후 공공하수관로 연결부에 밀봉캡 등을

삽입하여 수밀하게 막은 후 외부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여 밀봉조치 하여야 함.

☞ 붙임2 관종별 폐쇄 시공 예시 참조

- 우·오수가 인근 사유지 등 다른 필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지 내에 설치된 배수관로를 통하여 하수도 시설에 유입토록 하여야 함
- 건물 내(주방,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우수받이로, 지붕 및 마당 등의 빗물은 부지 내 우수받이로 연결하도록 하고, 최종 공공하수도의 합류관, 분류식지역은 우수관로 및 우수관로로 각각 연결 하여야 함.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에 의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위치가 표시된 명판을 사용하여 표시), 준공도면[평면도(폐쇄대상 배수설비 포함), 입면도(지하매설물 포함), 상세도(맨홀 및 관접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 준공도면 작성 예시 참조

- 인접 공공 우·오수관로(빗물받이 포함) 청소(준설 등)를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설치자에게 연락,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배수설비 자재는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제 규정에 의거 KS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기준의 제품으로 설계·시공되어야 하며, 준공 시 사용 배수설비 자재의 인증표시(KS, KPPS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하여야 함.

3. 건축공사에 따른 개인하수도(배수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시공자 선정 및 계약시 하수관로공사표준시방서(2022.12. 환경부) KCS 61 30 00 배수설비공사 상의 시방기준을 준수하고 옥내(배관설비, 건축법을 따름) 및 옥외 배수설비 시공 사항에 대한 감리자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배수설비 설치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신고 없이 시공하거나 관련 조건 미 준수시 공공하수관 원상복

		구 및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한국 전력 공사	남인천 지사	가. 협의내용 : 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전주이설 위치 확보 시 가능 ※ 향후 통행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위치가 확보되어야 이설가능 다. 요청사항 : 비용부담 검토 및 공사 준비를 위해 3개월 전 전주이설 요청.	○통행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위치를 확보하겠으며, 사업시행 3개월 전 전주이설 요청하겠음.	반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 의 의 건 서

사건번호	24의제0406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등골지구 소로3-5호선)사업
인허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근거법률	국토계획법	사업기간	2024. 02. 27. ~ 2025. 12. 31.
사업유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위원회 의결	2024. 03. 14.	면적	1572㎡

위 사업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의 의견을 제시한다.

협의의견	동의
내 용	동의의 이유는 아래와 같음
○ 본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생활터전 상실이나 재산침해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협의취득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소유자들에게는 해당사업의 내용,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 보상에 대한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통지하고 성실히 설명하기 바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담당자 : 주무관 이경민 (전화번호: 1544-9646 /팩스번호: 044-201-5695~4 /이메일:)

문서보안 : 비공개(5)
우편 5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여진동) 정부세종청사 15-1동 701호
<http://www.molit.go.kr>